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대 리 점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를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대리점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제18570호, 2021. 12. 7. 공포, 2022. 6. 8. 시행)됨에 따라,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기준을 정하고, 동의의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, 납부, 징수 및 환급과 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16. ~ 3. 28.) 진행 예정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교육 등 업무 위탁기관의 기준)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“시설
· 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은 별표 1과 같다.

제18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등)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및 독촉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의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2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3항의 “시정조치”는 “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4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영 제23조제5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

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를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를결”로, 같은 영 제24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”로 본다.

②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영 제25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”로 본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별표 1과”를 “별표 2와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별표 2와”를 “별표 3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 2로,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1]

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(제7조의2 관련)

1. 시설 기준

가. 바닥 면적이 150㎡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.

나.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인력 기준

가.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나.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) 대학에서 법학·경제학·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

2)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
3) 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

4)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(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)

다.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3.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기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)

가.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·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
나.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교육 등 업무 위탁기관</u> <u>의 기준) 법 제12조의4제2항에</u> <u>서 “시설·인력 및 교육실적 등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은</u> <u>별표 1과 같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등)</u> <u>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</u> <u>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</u> <u>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및 독촉</u> <u>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</u> <u>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u> <u>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</u> <u>이 경우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</u> <u>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</u> <u>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</u> <u>로,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 “법</u> <u>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</u> <u>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</u> <u>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</u> <u>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</u> <u>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</u> <u>따른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</u> <u>간이 지난 날부터 동의의결이</u> <u>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</u>

의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2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3항의 “시정조치”는 “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4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”은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”으로, 같은 영 제23조제5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”로,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 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”는 “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”로, 같은 영 제24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”는 “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”로 본다.

②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

	<u>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25조를 준용한다.</u> <u>이 경우 같은 영 제25조제1항의 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”는 “이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”로 본다.</u>
제19조(과징금 부과기준) ① (생략)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1과</u> 같다. ③ (생략) 제20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2와</u> 같다.	제19조(과징금 부과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별표 2와</u> -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20조(과태료 부과기준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과</u>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60